

의안번호	제315호
의결연월일	2021. 3. 17.

-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3. 9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3. 17.

제26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기획담당관 : 이 덕 호)

가. 제안이유

- 인사혁신처의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 및 민간위원 확대(안 제2조)
 -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 확대(5명 → 7명)
 - 공직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(3명 → 5명)
-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(안 제9조)
 -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추가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박 우 현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공직자윤리법」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의 내용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와 민간위원을 확대 하고, 의회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『연차보고서』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따르고 있으므로,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